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5 January 2019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김태준 상무이사

(Tel: 02-2112-0696)

Japan: Transfer pricing proposals focus on hard-to-value intangibles

일본: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중점을 둔 이전가격 제안

지난 2018년 12월 14일, 일본의 연립여당은(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이전가격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략적인 세제개혁안의 내용에 동의하였습니다.

금번 세제개혁안에는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s, 이하 "HTVI")에 대한 거래 가격의 합리성을 입증 할 수 있는 개선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HTVI 정상가격 계산 방법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가 없는 HTVI를 측정할 경우,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이하 "DCF")이 관계사 간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을 추정/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과세당국 역시 이러한 규정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HTVI에 정상가격산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사간 거래 시점에서의 DCF로 산출된 가격을 정황증거로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HTVI 가격 조정 조치

BEPS Action 8-10 최종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은 사후결과를 사전가격약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반영한 OECD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가격조정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가격 조정 조치: 사전에 HTVI 거래 시 정상가격을 책정한 것과, 사후 결과가 다른 경우, 일본 세무당국은 이러한 불일치 발생 가능성 및 사후 소득을 고려하여, HTVI의 정상가격에 도달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 책정한 정상가격에 기초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정상가격과 본래 거래가격 간의 차이 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격 조정 예외조건: 일본 세무당국이 요청한 바에 따라 특정한 기간 내에 납세자가 하기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격조정 조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 HTVI 거래 시 정상가격 측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추정치와 사후 소득 간의 불일치가 거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HTVI의 사용으로 인해 관련이 없는 당사자로부터 수입이 발생한 회계연도로부터 총 5년 간 실제 수입과 예상 수입 간의 차이 비율이 20% 이하인 경우.

이전가격 규정 상의 시효 연장

세무당국에서 사후결과 이후에, HTVI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효가 세무조사 일정과 맞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과제척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적용시기

상기 개정안은 법인세의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소득세 적용 안 경우는 2021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Back to top](#)

[OECD Solution Would Change Where, How Much Companies Taxed \(Bloomberg Tax Transfer Pricing Report – Dec. 20, 2018\) By Isabel Gorlieb](#)

디지털 경제에 대한 OECD의 대책

미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ECD 대책은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은 미국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대책은 다국적 기업들의 사법 관할 구역 내에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지에 대한 미국의 제안과 기업의 해외법인에 적용될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세 금액 및 이익 배분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제안

첫 번째 쟁점인 기업의 과세 금액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법인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이하 "GILTI")와 유사한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미국은 상기 제안에 대하여 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어디에 과세권이 있는가에 대한 대책안에 대하여 영국은 지적 재산권이나 상표 인지도와 같은 무형자산에 기반한 "비경상" 수익이나 초과 수익이 디지털 기업의 국제적 수입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특정 관할구역 내의 사용자들이 해당 수익에 기여한 비율과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기 영국이 제안한 대안을 적용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가치가 기업의 기능, 자산, 위험부담을 통해 창출 된다는 개념과도 거리가 있는 대안으로 국가간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브랜드 인지도 등의 "마케팅 관련 무형자산"을 통해 원천지국에 더 많은 이익을 재분배하는 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 또한 영국이 제안한 계획과 마찬가지로 적용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India: Country-by-country reporting deadline extended](#)

인도: 국가별 보고서 마감일 연장

인도 국세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이하 "CBDT")은 국가별 보고서 마감일이 2019년 3월까지 연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CbC보고서 마감일 연장은 1회성으로 진행됩니다.

CBDT의 발표내용은 하기 관련 상황에 적용됩니다:

10DB 규정 4항에 명시된 법률 제286조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준비하는 노고를 덜기 위해, 본 위원회는 법률 제119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제286조 제4항 (a)호 또는 (aa)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성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며, 이는 회계연도가 2018년도 2월 28일에 기산하여, 2019년 3월 31일에 종료함을 고려하였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